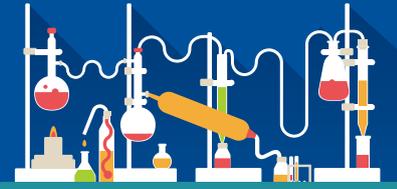


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관리되는 법적 규제물질이 24종 추가되었습니다

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특별관리물질에 포함되는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“안전보건규칙”이라 함) 시행일(17.3.3)부터 6개월 이내(17.9.2)에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설비·장비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


관리대상 유해물질 4종 추가 ('16년 : 167종 ▶ '17년 : 171종)

추가 물질 : 4종

- ① 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 ② 브이엠 및 피 나프타
- ③ 2-클로로-1,3-부타디엔 ④ 페닐글리시딜에테르

안전보건규칙 규제내용

- (제422조)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
 ※ 분말상태로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, 임시작업, 단시간작업, 허용소비량 이하 사용시 제외
- (제431조~제435조) 불침투성의 작업장 바닥, 부식·누출 방지조치, 경보설비·긴급 차단장치 설치
- (제436조~제438조) 작업수칙 제정, 탱크 내 작업시 안전보건조치, 사고시 대피 등
- (제441조~제451조) 국소배기장치 사용 전 점검, 명칭 등 게시, 저장 및 빈 용기 관리, 청소, 출입·흡연 금지, 세척시설 설치, 유해성 등의 주지, 호흡용 보호구·보호복 등 지급·착용

* “관리대상 유해물질”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물질로서 안전보건규칙 [별표 12]에서 정한 물질(총 171종)을 말한다.



특별관리물질 20종 추가 ('16년 : 16종 ▶ '17년 : 36종)

추가 물질 : 20종

- ① 디니트로톨루엔 ②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 ③ 디메틸포름아미드 ④ 2-메톡시에탄올
 - ⑤ 2-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⑥ 스토다드 솔벤트 ⑦ 아크릴로니트릴 ⑧ 아크릴아미드
 - ⑨ 2-에톡시에탄올 ⑩ 2-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⑪ 에틸렌이민 ⑫ 2,3-에폭시-1-프로판올
 - ⑬ 1,2-에폭시프로판 ⑭ 이염화에틸렌 ⑮ 1,2,3-트리클로로프로판 ⑯ 퍼클로로에틸렌
 - ⑰ 프로필렌 이민 ⑱ 하이드라진 ⑲ 황산디메틸, ⑳ 수은 및 그 화합물(이 경우 아릴 및 알킬화합물은 제외)
- ※ ②, ③, ④, ⑤, ⑨, ⑩, ⑳은 0.3% 이상 함유, 그 밖의 물질은 0.1% 이상 함유된 경우 특별관리물질에 해당

안전보건규칙 규제내용

- (제439조) 물질명·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·비치
- (제440조)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, 생식세포 변이원성, 생식독성 물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고지
- ※ 특별관리물질은 임시 또는 단시간작업인 경우에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,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도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므로 2017년도 상반기에 1회 이상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

* “특별관리물질”이란 발암성, 생식세포 변이원성,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안전보건규칙 [별표 12]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(총 36종)을 말한다.

추가된 24종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공단 MSDS 홈페이지(msds.kosha.or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